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해 외 진 출 기 업 의 국 내 복 귀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3.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규정 등 (안 제2조의2)

- 1) 개정법률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항 신설 및 추가된 업종에 대한 구체화 필요
- 2)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으로 규정함
- 3)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지 않던 방역, 면역 관련 업종 대상 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 기대

나. 첨단산업 및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체화(안 제3조의2)

- 1) 국내복귀 정의에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조항 신설 필요
- 2)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기술 등을 준용하고,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 등으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됨을 명시함
- 3)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 축소 요건 면제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치 필요성이 크거나 시급한 품목 등의 국내복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구체화(안 제6조)

- 1) 기존에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외투기업이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요건 규정 필요
- 2) 지원대상이 되는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으로 외투지원을 받은 이후 동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요건과 국내복귀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안 제6조1항1호)하고, 국내복귀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점과 경과규정 판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안 제6조1항2호)될 것으로 규정함. 이외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6조2항)

- 3) 지원대상 외투기업 요건을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외투기업 대상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의 국내복귀 증대 기대

라. 임대전용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규정(안 제11조의2)

- 1) 개정법률에서 임대전용 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2) 임대산단 입주시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 3)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대상 임대료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지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마. 동반복귀기업 지원 및 요건 개정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 1) 개정 법률에서 동반복귀 시간적 범위 및 지원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세부 내용 명시 필요
- 2) 신설된 동반복귀 시간적 요건을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함
- 3) 시간적 요건을 명시하여 동반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 구체화 등을 통한 동반복귀 활성화 기대

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원 및 절차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 규정 필요
- 2) 국내복귀기업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수요기업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하여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에 물품공급, 서비스 제공,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협력형 복귀 기업 지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3)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계망을 갖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성 및 고용, 투자 규모 등 경제적 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 기대

4.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5. 주요토의과제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민원사무 처리대상 확대 등 규정(안 제12조)

- 1) 개정 법률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민원사무 범위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
- 2)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규정함
- 3) 폭넓은 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등)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2.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
3. 산업발전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득,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이하,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

도 또는 축소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등에 관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2.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로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4. 그 밖에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

출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하였을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은 이후 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0조제1항제1호 중 “선정”을 “선정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 기업 간 공동물류 시설 및 공동 기반 시설 등의 구축·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요기업”이란 물품수요, 서비스 수요,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 해당하는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구조 등이 창출하는 고용규모 또는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신청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 2항에 따라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7(협력형복귀기업 지원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에 있어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형 복귀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협력형 복귀기업으로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를 “그 밖”으로 한다.

⑥ 법 제 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등)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2.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		
		3. 산업발전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득,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신 설>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이하,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등에 관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2.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로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 ----- ----- -----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생략)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신설>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4. 그 밖에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 요건을 모두 갖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하였을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은 이후 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 요건을 모두 갖추 것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 의 사실관계 확인 2. 3. (생략) ②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제11조의3 (생략) <u><신설></u>	을 받은 기업으로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 ----- ----- -----. 1. ----- ----- 선정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 귀기업 선정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3·제11조의4 (현행 제11 조의2 및 제11조의3과 같음)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u><신설></u>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 기업 간 공동물류 시 설 및 공동 기반시설 등의 구축 ·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및 절 차 등에 대하여서는 고시로 정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절차에 대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 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 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 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의 수요기업”이란 물품수요, 서비스 수요, 공동 연구개발 등 의 협력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 에 해당하는 수요기업과 국내복	
---	--	--------------------------	---	--

귀기업이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구조 등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또는 지역경제과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신청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 2항에 따라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① ~ ⑤ (생

제11조의7(협력형복귀기업 지원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에 있어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형 복귀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협력형 복귀기업으로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① ~ ⑤ (현행

략) <신 설>	과 같음) ⑥ 법 제 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⑦ 그 밖-----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연 락 처	(044) 203 - 4069